

투명경영위원회 규정

(제정) 2017. 11. 2.

(개정) 2018. 11. 14.

(개정) 2020. 03. 27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투명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사항)

- ① 위원회는 본규정 제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를 위원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임기 만료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하지 아니한 사외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제 4 조 제 3 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4 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일 3 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

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17 조의 8 의 내부거래
2.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에 해당하는 거래
3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 11 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)

간사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간사는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한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종료 후 또는 해당 위원 직접참여 불가사유 해제 후 3 영업일 이내에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제 13 조(보고)

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4 조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준법관련 부서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회의 의사록 서면 결의록과 회의에 부의한 원안을 간사가 보관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용어변경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